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tlanta GA 39901-0010

통지번호	CP51A
과세 연도	2007
통지일자	2009 년 2 월 9 일
사회복지 보장번호	999-99-9999
연락처 전화번호	1-800-829-0922
페이지	1 / 4

s018999546711s
JAMES & KAREN Q.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N, CT 00000-7253

귀하의 [2007]년도 소득세를 계산하였습니다

미납 세금: \$9,999.99

귀하가 발송한 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후에 [결혼한 부부] 상태 및 [독신]
면세를 사용하여 귀하의 [2007]년도
소득세를 계산하였습니다. 귀하의
미납금은 [\$9,999.99]로 결정하였으며
[2009년 3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 요약

납부할 세금	\$9,999.99
납부한 금액	- 99.00
공제금	- 99.00
미제출 벌금	999.99
미납 벌금	999.99
이자 과세	999.99
[2009 년 3 월 2 일]까지 납부할 금액	\$9,999.99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

- \$9,999.99의 미납금을 [2009년 3월 2일]까지 납부하여 추가적인 벌금과 이자 부과금을 피하십시오. 연방세 전자 납부 시스템 (EFTPS)에 등록된 경우에는 수표 또는 우편환에 의한 납부 이외의 납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FTPS에 등록하려면, www.eftps.gov를 방문하거나 call 1-800-316-6541에 전화를 거십시오.



James & Karen Q.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n, CT 00000-7253

통지번호	CP51A
통지일자	2009 년 2 월 9 일
사회복지 보장번호	999-99-9999

납부

- 연방 재무부에 수표나 우편환을 납부하십시오 .
- 납부서 및 서신에 귀하의 사회복지 보장번호 (999-99-9999), 과세 연도 (2009) 및 양식번호(1040)를 기재하십시오.

국세청
ATLANTA, GA 33901-0010
s018999546711s

**2009년 3월 2일까지 납부할
금액**

\$9,999.99

0000 0000000 0000000000 0000000 0000

통지번호	CP51A
과세 연도	2009
통지일자	2009 년 2 월 9 일
사회복지 보장번호	999-99-9999
페이지 2 / 4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계속

- 미납금을 납부할 수 없으면 지금 가능한 만큼 납부하고 시간에 따라서 잔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예약을 하십시오. 다음에 관한 정보는 www.irs.gov를 방문하여 “세금납부 옵션”을 검색하십시오:
 - 할부 및 납부 협약서—자격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양식을 다운받아서 시간과 금전을 절약하십시오.
 - 귀하의 은행계좌로부터 자동 공제
 - 급여공제
 - 신용카드 납부
- 또는, 저희에게 1-800-829-0922 로 전화를 걸어 귀하의 옵션을 상담하십시오.

세금 계산서

[결혼한 부부] 상태 및 [독신] 면세를 사용하여 귀하의 세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설명	IRS 계산
조정소득, 라인 37	\$9,999
선불 근로 소득 공제	9,999
과세대상 소득, 라인 43	9,999
총 세금, 라인 60	\$9,999

귀하의 납부금 및 공제금

설명	IRS 계산
소득세 원천징수액, 라인 61	\$9,999
근로소득 공제	9,999.00
기타 납부금	9,999
기타 공제, 라인 63-67, 69, 70	9,999
총 납부금 및 공제금	\$9,999



연락처 정보

국세청
ATLANTA, GA 33901-0010
s018999546711s

James & Karen Q.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n, CT 00000-7253

통지번호	CP51A
통지일자	2009 년 2 월 9 일
사회복지 보장번호	999-99-9999

귀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1-800-829-0922 에 전화를 걸거나 www.irs.gov 를 방문하십시오.
서신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이곳을 체크하십시오. 귀하의 서신에 귀하의 납세자 ID 번호(999-99-9999), 과세 연도(2007) 및 양식번호(1040)를 기입하십시오.

1 차 전화번호	최적 통화시간	2 차 전화번호	최적 통화시간
	☐ 오전 ☐ 오후		☐ 오전 ☐ 오후

통지번호	CP51A
과세 연도	2007
통지일자	2009 년 2 월 9 일
사회복지 보장번호	999-99-9999
페이지 3 / 4	

벌금 국세청은 법률에 의하여 적용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미제출

제출일자	초과 개월	미납금	벌금 비율	금액
2010/9/15	5	\$9,999.99	4.5%	\$9,999.99

기한 이후에 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 국세청은 5개월 이하에 대해 매월 미납 세금의 최고 5% 또는 미납 금액의 최대 25%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세신고서가 60일 이상 늦은 경우에 국세청은 2008년 12월 31일 이후 기일의 소득세신고서에 대해서 최소 \$135와 미납 세금 100%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합니다(국세청 규정 제6651조)

미납부

제출일자	초과 개월	미납금	벌금 비율	금액
2010/9/15	10	\$9,999.99	0.5%	\$9,999.99

납기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국세청은 미납세금의 최대 25%까지 매월 미납금의 0.5% 벌금을 부과합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규정 제6651조)

벌금의 제거 또는 감액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사망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금융기록의 분실과 같이 귀하가 적시에 납세자 책임을 충족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국세청이 귀하의 벌금부과의 제거 또는 감액을 고려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취하십시오:

- 국세청이 재고하기를 원하는 벌금 부과를 명시하십시오(예: 2005 년도 지연제출 벌금).
- 각 벌금 부과에 대해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 진술서를 서명하여 저희에게 발송하십시오.

국세청은 귀하의 진술서를 검토하여 귀하의 설명을 벌금부과를 감액 또는 제거할 타당한 이유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잘못된 권고서로 인한 벌금 제거

귀하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권고서 바탕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국세청은 귀하가 다음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벌금을 제거합니다:

- 특정 사안에 관해 국세청에 권고서를 요청한 경우.
- 국세청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국세청으로부터 권고서를 수령한 경우
- 국세청 권고서에 의존하였고 해당 권고서를 바탕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권고서를 바탕으로 한 벌금 제거를 요청하려면 환불청구 및 경감 요청(양식 843)을 작성하여 귀하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국세청 센터에 제출하십시오. 양식 사본을 원하거나 국세청 센터를 찾으려면 www.irs.gov 를 방문하거나 1-800-829-0922 에 전화를 주십시오.

통지번호	CP51A
과세 연도	2007
통지일자	2009 년 2 월 9 일
사회복지 보장번호	999-99-9999
페이지 4 / 4	

이자 부과금

국세청은 법률에 의하여 납세신고 만기일부터 세금이 완납된 날짜까지 미납 세금에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이자는 적용되는 벌금을 포함하여 미납금이 있는 동안에 부과됩니다. (국세청 규정 제 6601 조)

내용	금액
총이자	\$999.99
아래의 총액은 귀하의 미납금에 관한 이자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요율을 보여줍니다. 이자의 자세한 계산에 대해서는 999-999-9999 로 전화하십시오.	

가산 이자 과세

미납 금액이 \$100,000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 통지서 날짜로부터 10 업무일 이내에 귀하의 납부금을 영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금액인 \$100,000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 통지서 날짜로부터 21 역일 이내에 하의 납부금을 영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시간 이내에 국세청이 완납금을 영수하지 않으면 법률은 귀하가 미납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자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

- 참고 사이트: www.irs.gov/cp51a.
 - 세무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은 www.irs.gov를 방문하거나 1-800-TAX-FORM (1-800-829-3676)로 전화를 주십시오.
 - 이 통지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하십시오.